

『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9195(2022.8.24.)호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」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(대통령령)상 위임사항을 보다 구체적인 규정으로 마련하라는 지침을 반영하여 위임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거래에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의 기준 규정(안 제14조제2항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 제14조 ‘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’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5. 참고사항

○ 타 시·군·구의회 동일 조항 규정 현황

제정 시군구	조문 내용
부산 남구, 부산진구	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<u>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</u>를 말한다.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·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광주 광산구	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<u>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</u>를 말한다. 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2.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사항
고성군, 영양군, 평창군, 홍천군	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. 1. 간담회·위원회 및 각종 회의 참석 2.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 3. 그 밖에 의정활동이나 위원회 등의 활동
상주시, 청도군, 태안군, 안양시	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<u>의원이 의정활동요구 자료, 의안 심사, 예산 심의,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</u>를 말한다.
여주시	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<u>그 귀속·출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</u>를 말한다.
진주시, 의령군, 통영시, 함안군, 대구 서구, 대구 동구, 부산 사하구	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<u>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</u>를 말한다.
합천군, 부산 기장군, 부산(동래군, 북구, 서구, 수영구, 영도구, 중구, 해운대구), 대구 남구	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<u>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</u>를 말한다.